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09.14 ( 월 10:30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#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발의자 : 심홍섭 의원 외 6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9월 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### 3. 제안 이유

-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미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, 수목원의 각종 시설물의 개방,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수목원의 개원과 휴원일, 관람과 입장시간의 규정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무료 명시(안 제6조)
- 입장과 관람 제한 규정 명시(안 제7조)
- 수목원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의 규정(안 제8조)

-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- 수목원 관리·운영,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0조)
-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의 강사료 지급 규정(안 제11조)
- 수목원의 시설물, 재산의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(안 제12조)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’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서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안에 ‘입장과 관람 제한 규정’, ‘수목원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’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